

의안번호	제 8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2월 일 (제296회)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 헌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0년 11월 30일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0년 11월 30일

발 의 자 : 정 현 · 김희수 · 김종필 · 윤성옥

김봉희 · 박문희 · 황규철 의원(7명)

의안 번호	84
----------	----

1. 제안 이유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수정(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등)
- 나. 일부 조항의 신설(안 제6조제5항)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

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각 해당 위원장이 즉시 변경 추천하여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구성 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u>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위 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 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 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 <u>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u> <u>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u> <u>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u> <u>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u> <u>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u> <u>천하는 자 3명</u>
3명	

현행	개정안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6. ~ 8. (생략) ④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7조(임기) ① (생략) 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각 해당 위원장이 즉시 변경 추천하여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①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 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